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온라인 중개 금지〉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34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온라인 중개 금지 ...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5. 3. 19.

다. 회 부 일: 2025.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온라인 중개 금지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한 관광객이용시설업경영자의 등록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미등록 관광객이용시설업경영자의 통신판매중개를 한 통신판매중개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u>제20조의4(통신판매중개의 제한)</u>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

< 신 설 >

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경영자”라 한다)에게서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할 때 관광객이용시설업경영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관광객이용시설업경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통신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영업 정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86조(과태료) <신 설>	<u>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 제86조(과태료) ①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①·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이 부과·징수한다.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지난 2025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 및 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2027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관광진흥법」 [시행 2027.2.1.] [법률 제20739호, 2025.1.31., 일부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 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마.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은 대부분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등이 관광객이용시설업경영자에게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숙박 중개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관광객이용시설업 영업을 금지하는 경우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경우 동법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에는 해당 업종으로 분류하여 개정안에 따른 ‘미등록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판별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통신판매중개 행위를 처벌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지난 2024년 11월에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071호)은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에 따라 특정할 수 없는 ‘미등록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숙박 시설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포함한 모든 미등록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으로 제재 중이며,¹⁾ 미신고 숙박업자를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

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

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